

의안번호	제 1 호
년월일	2018년 8월 30일

의
결
사
항

직제규정 개정(안)

제안부서	경영지원팀
제출년월일	2018년 08월 30일

1. 의결주문

- 직제규정 개정(안)에 대한 시행일자를 변경코자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사유

- 중진공 전문인력 파견계약이 ‘18.7.31일자로 사업종료됨에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제개편을 위한 관련규정(직제규정) 개정(안)을 승인 (* 18.7.30)받았으나,
- 창업진흥원(2명)에 대한 기본계약(파견계약기간) 변경이 불가하여 해당기간 동안의 근로자 파견사업(노동부)의 적법한 유지를 위하여 조직운영 변경 시행일자를 ’ 18.9.1에서 ’ 19.1.1일자로 변경코자 부의 함

<참고_파견근로자 운영 현황>

사용사업주	파견근로자 수	구 분	계약만료일
중소기업진흥공단	75명	전담교수, 컨설턴트	‘18.07.31
<u>창업진흥원</u>	<u>2명</u>	<u>전문위원</u>	<u>‘18.12.31</u>

3. 주요내용

- 직제규정 개정(안) 시행일자 변경
 - (변경 전) 시행일자 : ‘18. 9. 1 → (변경 후) 시행일자 : ’ 19. 1. 1.

4. 참고사항

- 근거규정 :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